

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7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 제3조제2항 “책무”규정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은 주민등록 세대별 공부상으로 1인가구 현황파악이 가능하나 개인 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가족 등과 단절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등 1인 가구가 반드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현행 조항으로 변경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파악과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·수립한다는 개정안을 현행안으로 개정함(안 제3조제2항)

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”을  
“고독사 현황파악”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<u>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·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과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·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개정안과 같음</p> <p>② ----- <u>고독사 현황 파악과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시장은 <u>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</u></p>	<p>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시장은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</p>	<p>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)</p> <p>① 개정안과 같음</p>

한다.

1. 고독사 예방을 위한  
기본방향 및 목표

2.·3. (생략)

4. 고독사 예방을 위한  
사회 환경 조성  
에 관한 사항

5. 청년층·중년층·  
노인 등 생애주기별  
고독사 예방대책 및  
지원방안

6. 고독사 예방 교육  
및 연구지원에 관한  
사항

7. (생략)

8. 그 밖에 고독사 예  
방을 위하여 시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사항

포함한 예방 및 지원  
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 
한다.

1.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 
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 
위한 기본방향 및  
목표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고독사 및 사회적  
고립의 예방을 위한  
사회 환경 조성  
에 관한 사항

5. 청년층·중년층·  
노인 등 생애주기별  
고독사 및 사회적  
고립 예방대책 및  
지원방안

6. 고독사 및 사회적  
고립 예방 교육 및  
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
7. (현행과 같음)

8. 그 밖에 고독사 예  
방 및 사회적 고립  
가구 안전망 확충을  
위하여 시장이 필요

1. 개정안과 같음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개정안과 같음

5. 개정안과 같음

6. 개정안과 같음

7. (현행과 같음)

8. 개정안과 같음

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예방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0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, 관련 기관 및</p>	<p>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,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</u></p> <p>11. ----- <u>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</u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개정안과 같음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개정안과 같음</p> <p>11. 개정안과 같음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개정안과 같음</p>
---	--	---

단체 등과 유기적인  
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 
한다.

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,  
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 
유기적인 협력체계를  
구축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 
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고독사 위험”을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”으로  
한다.

제4조 제목 “(예방계획의 수립)”을 “(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)”  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  
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”으로, “예방계획”을 “예방 및 지원계  
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 
안전망 확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고독사 예방”을 “고독사  
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고독사 예방  
대책”을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 
중 “고독사 예방”을 “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”으로 하며, 같은  
항 제8호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”으로  
한다.

제7조 제목 “(예방사업)”을 “(예방 및 지원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 
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10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, 일자리  
등 맞춤형 지원사업

제7조제1항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예방사업”을 “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고독사 위험</u>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<u>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</u>을 시행·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<u>예방계획의 수립</u>) ① 시장은 <u>고독사 예방</u>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예방계획</u>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고독사 예방</u>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4. <u>고독사 예방</u>을 위한 사회 환</p>	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</u>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<u>고독사 현황 파악과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<u>예방계획의 수립</u>) ① 시장은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</u>의 <u>안전망 확충</u>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예방 및 지원계획</u>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</u>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</u></p>

경 조성에 관한 사항

- 5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- 6.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- 7. (생략)
- 8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생략)

제7조(예방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1. ~ 9. (생략)

<신설>

- 10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·③ (생략)

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
에 관한 사항

- 5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- 6.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- 7. (현행과 같음)
- 8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1. ~ 9. (현행과 같음)

- 10. 청년층·중년층·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,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

- 11. -----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-----

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  
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 
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, 관련  
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  
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  
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 
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  
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,  
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 
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